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8. 20 선고 2024가단5031440 판결 [보증채무금]

## 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8. 20.

## 주 문

- 피고는 원고에게 90,540,333원 및 그 중 66,324,058원에 대하여 2024. 8. 2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### 1. 청구의 표시

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다만, '채권자'는 '원고'로, '채무자'는 '피고'로 본다).

## 2. 적용 법조

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판사 박창우

별지